

제188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2011.10.6(목) 10:00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 문 위 원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자 : 고령군수

2. 제안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의 개설·관리 및 상인회의 설립운영,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 사업의 사후관리와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사업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안 제5조)
- 시장활성화 구역의 요건과 지정 절차에 관한사항(안 제3장)
- 농민 직영매장의 설치와 운영등에 관한 사항(안 제5장)
- 상인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장)
- 시장관리자의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장)
-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장)
- 과태료의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9장)

4. 관계법령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고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유통구조와 소비자의 구매형태의 변화에 따라 지역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여 전통시장을 자생력을 갖춘 지방 중소유통업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2장은 인정시장의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시장의 기준, 시장구역의 설정 기준,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 안 제3장에서는 상권활성화 구역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상권 활성화 구역 요건, 범위, 지정절차,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였음.

• 안 제4장에서는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5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임시시장의 개설·등록·관리 등록취소 사항에 관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장에서는 상인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3조부터 안 제30조까지 상인회의 설립, 정관, 등록 취소, 서류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하였습니다.

- 안 제8장에서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한 사항으로

안 제34조부터 안 제39조까지 시설물의 소유권, 위탁관리, 수탁자의 의무, 사용료 및 경비징수, 지도·감독에 등에 관한 사항을

- 안 제9장에서는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40조부터 안 제46조까지는 과태료 부과·징수, 부과 기준, 처분통지, 강제징수, 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습니다.

○ 내용과 형식을 검토한 결과

-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 지역의 유통산업 환경의 변화로 침체된 지역상권의 경영 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전통시장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의 타당성, 절차 이행이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의 규정에 적합하고, 조례 제정의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됨.